

의안번호	2214278
의 퇴 인	곽상언 의원
회 답 일	2026. 1. 12.
추계번호	25A60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9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²⁾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음(제1항)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에게 진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영상녹화 및 녹음을 하도록 하여야 함(제3항) 1.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2.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의 신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	재량규정

- 1) 개정안은 제14조의8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소에서 증거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같은 조 제11항 등을 고려할 때 “소송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규정은 재정수반요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

안 제14조의8(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⑪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관한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한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신문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①사건의 표시, ②출석한 당사자 등의 성명, ③신문의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이의 요지, ④선서를 시키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신문한 경우 그 요지 등이 기재된 서면인 진술경과요약서를 작성하여 영상녹화물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제6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11조³⁾를,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0조⁴⁾를 준용(제12항)	
2	안 제14조의11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에 상대방 당사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상대방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복사, 장치의 작동·계측·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음(제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 이상을 제1항의 전문가로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또는 「특허법」 제154조의2⁵⁾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재량규정

3)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민사소송법」

제370조(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개정안의 “법 제164조의2”는 오기로 보이므로 “「특허법」 제154조의2”로 표기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전문가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함(제5항)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제14항)	
3	안 제17조의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제14조의9제3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②제14조의1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⁶⁾ 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봄	의무규정
4	안 제18조의4제1항 (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제14조의11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의무규정

6)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8조의6 신설 (위증죄)	제14조의9제5항7)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6	안 제20조제1항 신설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제14조의11 ⁸⁾ 제11항9)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함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의무규정

7) 안 제14조의9(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⑤ 법원사무관등은 진술인에게 제1항에 따른 신문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 후,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3. 선서의 의무 및 취지
4. 다음 사항에 대한 경고

가. 당사자가 진술인인 경우(법정대리인이 진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진술인인 경우: 위증의 벌

5.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8) 개정안의 “제128조의6”은 오기로 보이므로 “제14조의11”로 표기

9) 안 제14조의11(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신청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4조의9 신설 (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의11 신설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3	안 제17조의3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	안 제18조의4제1항 (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5	안 제18조의6 신설 (위증죄)	
6	안 제20조제1항 신설 (과태료)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하여 ①양 당사자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사실 등의 검증에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②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안의 내용에 수반하여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
- 개정안에는 재정지출의 증가와 재정수입의 증가 요인이 모두 있으며, 이를 조문 및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재정지출의 증가**는 당사자 간 신문 제도 도입 및 이를 위한 영상녹화를 하는 데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장비 구입비, 전문가 사실조사 도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
 - **안 제14조의9**에 따라 당사자 간 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녹음 및 영상녹화가 가능한 변론준비실과 해당 절차의 실무를 운영할 법원사무관 등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공무원 인건비와 함께 변론준비실 내 영상녹화시설 장비 등의 구입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 제14조의11**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문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음¹⁰⁾
- **재정수입의 증가**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과 진술인의 거짓 진술에 따른 벌금, 전문가 조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인해 발생
 - **안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은 벌금, **제20조**는 과태료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벌금 또는 과태료를 징수할 경우 재정수입(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증가 요인

구분	내용
재정지출 증가	· (제14조의9) 당사자에 의한 신문: 법원공무원 인건비, 영상녹화 시스템 도입 등에 따른 장비 구입비 · (제14조의11)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기술심리관·조사관 인건비
재정수입 (세외수입) 증가	· (제14조의9제12항) 해당 규정에서 준용한 「민사소송법」 제311조 및 제37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제17조의3) 「형법」 제129부터 제132조까지의 공무원 의제 규정에 따라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 몰수 및 가액 추징¹¹⁾ · (제18조의4 및 제18조의6) 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및 위증죄에 대한 벌금 부과 · (제20조) 전문가 사실조사 거부·방해·기피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 안 제14조의11제14항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동일한 체계를 가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890호,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인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을 전문가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이므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사실조사를 하는 전문가가 기술심리관 또는 조사관으로 지정될 때 발생할 공무원 인건비를 중심으로 살펴봄

11)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개정안에 따른 순 재정부담은 재정지출의 증가액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당사자 간 신문과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법원별 필요 인력 및 장비, 의무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 건수 및 액수 등을 알 수 없어 이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지출 증가액의 경우 영상녹화시스템 등 장비 수요와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관할하는 각 법원별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증원 수요를 알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안 제14의9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운영하면 해당 절차의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경우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가 소요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공증인 등) 수수료, 일당 및 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영상녹화 및 진술경과요약 등을 명할 사람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 비용추계를 위하여 당사자 간 신문절차상 실무를 담당할 사람이 법원공무원인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개정안에서 해당 법원공무원의 직급을 한정하지 않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규정하여 해당 직무를 담당할 법원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또한, 영상녹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장비 구입비의 경우 기존 장비를 고려한 법원별 컴퓨터 및 영상녹화시설 등 장비 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4조의11에 따라 법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인 경우에만 공무원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원이 지정할 전문가(기술심리관 및 조사관, 전문심리위원,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 비용추계를 위하여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으로 한정하더라도, 각 법원별로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한 부분과 신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증원 필요한 기술심리관 및 조사관의 수를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재정수입 증가액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금전 제재를 받게 될 의무 위반행위의 건수와 1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을 바탕으로 산출될 것이나, 현재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재정수입 증가 규모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하여 당사자 상호간 신문 및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재정지출과,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데 따른 재정수입을 차감한 추가재정소요(순 재정부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